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의안 번호	2041
----------	------

2024년 9월 9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이성배 의원 외 9명

나. 제안일자 : 2024년 8월 12일

다. 회부일자 : 2024년 8월 14일

라. 상정일자

○ 제326회 임시회 제5차 교통위원회(2024년 9월 9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성배 의원)

가. 제안이유

○ 근래 차량이 보도에 돌진하여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건이 늘어나

고 있음. 특히 최근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 사고로 16명이 사상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발생한 바 이를 예방할 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임.

- 이에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곳에 기존 보행자 울타리보다 강화된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차량 돌진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보행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내용 신설(안 제17조의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4. 8. 20. ~ 2024. 8. 24.

- 제출의견 : 의견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치 결과¹⁾

○ 제출의견 : 원안가결

- 보행자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등 보행자 안전이 위험한 곳에 조례 제17조의2 제2항 각 호의 시설물이나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여 수용하고자 함

1) 교통정책과-7103호(2024.4.18.) “제323회 임시회 의원발의 의안에 대한 의견제출”

4.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장훈)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최근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같이 차량의 돌진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보행자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구간에는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지난 7월 1일 시청역 주변에서 차량이 역주행하여 보도를 돌진하면서 9명의 사망자와 7명의 부상자를 내는 충격적 사고가 발생하여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바 있음

특히, 동 사고로 인한 사상자 대부분이 차도가 아닌 인도에서 대기중에 사고를 당했다는 점에서 보행자 사고다발지역에 대한 보행 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 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970년 교통사고 통계관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나, 최근 3년간 보도통행중 사고건수는 2,226건('21) → 2,589건('22) → 2,632건('23)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최근 3년간 보도통행중 사고현황

연도	사고건수	사망자수	중상자수	경상자수	부상신고자수
2023년	2,632	24	849	1735	206
2022년	2,589	24	822	1736	168
2021년	2,226	21	745	1455	131

※ 자료 : 도로교통공단 통계자료

- 동 개정조례안은 차량 돌진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시민들이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행사고의 위험이 높은 경우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7조의2제2항의 시설물이나 방호울타리 등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현행 조례 제17의2제2항의 시설물²⁾은 보행자우선도로³⁾를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우선도로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보행사고가 빈번한 곳에 설치하는 것은 강화된 안전시설로 인명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동 조례의 개정목적에 부합한다 할 것임

2) 제17조의2(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구성 등) ① 시장은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법 제17조의2에 따라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행자우선도로에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通行할 수 있도록 법 제17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1. 안전표지 및 안내표지 2. 속도저감시설 3. 보행 친화적 도로 포장

4. 주차 및 정차 억제 시설 5. 장애인 안전시설 6. 조경시설 7. 편의시설 8. 조명시설

9.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법 제17조의3제2항의 보행자우선도로 조성계획에 포함된 시설

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보행자우선도로"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행자 통행이 차마(「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를 말한다. 이하 같다)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를 말한다.

- 또한, 방호울타리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4)에 따르면 주행 중 정상적인 주행경로를 벗어난 차량이 길 밖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로 보행자 사고예방을 위해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 특히, 국토교통부에서 시정역 사고와 관련하여 방호울타리 관련 지침 개선⁵⁾을 추진하고 있고 사고 후 보행자용 울타리를 차량용 방호울타리로 강화하여 교체한 바 있음을 고려할 때 동 개정조례안은 개정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다만, 사고가 자주발생하는 곳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자칫 지나친 과잉설치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보행자사고에 대한 분석과 명확한 기준마련도 병행 검토가 필요할 것임

4) 2.1 기능 및 종류 2.1.1 기능

방호울타리는 주행 중 정상적인 주행 경로를 벗어난 차량이 길 밖, 대향 차로 또는 보도 등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탑승자의 상해 및 차량의 파손을 최소한도로 줄이고 차량을 정상 진행 방향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며, 부수적으로는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고 보행자의 무단 횡단을 억제하는 등의 기능을 갖는 시설이다.

5) 연합뉴스, 국토부, 시정역 사고에 방호울타리 관련 도로관리지침 보완 검토,2024.7.4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성배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041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08월 12일

발 의 자: 이성배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김경훈, 김동욱,
남궁역, 송경택, 이상욱,
이원형, 이종환, 최민규
의원(9명)

1. 제안이유

- 근래 차량이 보도에 돌진하여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음. 특히 최근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 사고로 16명이 사상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발생한 바 이를 예방할 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곳에 기존 보행자 울타리보다 강화된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차량 돌진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보행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내용 신설(안 제17조의3)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
- 다. 기타 : 신 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보행안전시설의 설치) 시장은 보행자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간에 제17조의2 제2항 각 호의 시설물이나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호울타리 등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p><u>제17조의3(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 시장은 보행자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간에 제17조의2 제2항 각 호의 시설물이나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호울타리 등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u></p>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7조의3(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을 신설함에 따라 관련 비용 발생

[참고] 2024년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관련 분야별 예산 내역

조항	사업명	예산액(천원)
제17조의3	자치구 위탁관리 도로시설물 보수·보강	197,800
	- 중구 장충단로 방호울타리 설치 : 200,000원×50m	10,000
	- 성동구 행당로 방호울타리 설치 : 200,000원×464m	92,800
	- 성북구 동소문로 등 2개소 방호울타리 설치 : 200,000원×50m	10,000
	- 노원구 노원로 등 2개소 방호울타리 설치 : 200,000원×225m	45,000
	- 서초구 사평대로 방호울타리 설치 : 200,000원×200m	40,000

※자료: 2024 서울시 예산서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2항)
 -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7조의3(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을 신설함에 따라 관련 비용이 발생(방호울타리 설치 등)할 수 있으나 설치시설물의 대상 및 규모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현 시점에서는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 계 분 석 관 김지혜
 ☎ 02-2180-7953
 e-mail : kjh0123@seoul.go.kr